

# 2024년 토목·조경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2024. 7. 1.

(참고: 간접노무비율, 기타경비율, 일반관리비율, 이윤율,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)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	[기타경비]			공사규모 (추정가액)	[일반관리비]		[이윤] (노+경+일) x 율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				
		(직노) x 율			(재+노) x 율		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				
		토목	조경	산업 설비 (토목)	토목	조경	산업 설비 (토목)		토목, 조경, 산업·설비(토목)	전문 공사		종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자재 포함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(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) x 1.2 중 작은 금액					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4.3	14.3	14.3	5.8	5.5	5.8	5억 미만	6.0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<sup>주)</sup>				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4.5	14.5	14.5	6.0	5.8	6.0									토목공사(토건)	0.40	준설공사, 포장공사 토공사, 비계구조물해체공사	0.68	5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
	13~36개월 (1095일)	14.6	14.6	14.6	6.3	6.0	6.3																	50억 미만	5.5	50억 미만	5.5
36개월 초과 (1096일)	15.0	15.0	15.0	6.8	6.5	6.8	5억 - 30억 미만	5.0	5.0	12.0	산업·설비공사	0.16	상하수도설비공사,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	0.51	50억 ~ 50억 미만	5.0 ~ 50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			
6개월 이하 (183일)	14.0	14.0	14.0	6.2	6.0	6.2	30억 - 50억 미만													5.5	5.5	12.0	조경공사	0.18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	0.32	50억 ~ 50억 미만
7~12개월 (365일)	14.2	14.2	14.2	6.4	6.2	6.4	50억 - 100억 미만	5.0	5.0	12.0	조경시설물설치,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,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	0.16	50억 ~ 50억 미만	5.0 ~ 50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					
13~36개월 (1095일)	14.7	14.7	14.7	7.2	6.9	7.2	100억 - 300억 미만											5.0	5.0	12.0	조경시설물설치,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,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	0.16	50억 ~ 50억 미만	5.0 ~ 50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
36개월 초과 (1096일)	14.1	14.1	14.1	7.5	7.2	7.5	300억 - 1000억 미만	5.0	5.0	10.0	그 외	0.10	50억 ~ 50억 미만	5.0 ~ 50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					
6개월 이하 (183일)	13.3	13.3	13.3	6.4	6.1	6.4	1000억 이상											4.5	4.5	9.0	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50억 이상	추정금액 800억 미 만 건설공사 (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,000억)	추정금액 800억 이 상 건설공사 (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,000억)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
7~12개월 (365일)	13.4	13.4	13.4	6.6	6.3	6.6	1000억 이상	4.5	4.5	9.0	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50억 이상	추정금액 800억 미 만 건설공사 (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,000억)	추정금액 800억 이 상 건설공사 (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,000억)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					
13~36개월 (1095일)	13.5	13.5	13.5	6.8	6.5	6.8	1000억 이상																				
36개월 초과 (1096일)	14.0	14.0	14.0	7.3	7.1	7.3	1000억 이상											4.5	4.5	9.0	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50억 이상	추정금액 800억 미 만 건설공사 (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,000억)	추정금액 800억 이 상 건설공사 (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,000억)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

\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, 여비·교통비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

□ 산업·설비(토목) 해당공종: 수처리시설(오폐수, 하수처리, 분뇨처리, 정수장) 등

[산재보험료]		[환경보전비]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		
(노) x 3.56		(직접공사비) x 율		(직접공사비) x 율		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: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: 재료비(도급자관급자재 포함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. 노동부 고시 제2024-1호(2024. 1. 5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공사의 종류		공사규모(추정가액)		- [건축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나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
[고용보험료]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50억 미만		- [토목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
(노) x 율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- [중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		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지하철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· 고체방 담 공사 등 · 담 신설공사,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방신설공사		
[1등급] 1400억 이상	1.57	철도		300억 이상 중시·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한 신설공사 및 제방신설공사		
[2등급] 900억 ~ 1400억 미만	1.30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300억 이상 중시·중평제(건축)		· 터널신설공사 등 · 도로, 철도,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		
[3등급] 570억 ~ 900억 미만	1.13	항만		턴키·대안공사		- [특수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1) 제1호 '마'목로서 시행규칙(별표3)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/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
[4등급] 370억 ~ 570억 미만	1.06	댐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 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· 「전기공사법」, 「정보통신공사법」, 「소방공사법」, 「문화재수리공사법」에 의한 공사		
[5등급] 220억 ~ 370억 미만	1.03	택지개발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2 건축공사, 토목공사 등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		
[6등급] 140억 ~ 220억 미만	1.02	그 밖의 토목공사(하천 등)	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	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, 2024.1.1.)		
[7등급] 고시금액 ~ 140억 미만	1.01	조경		70억 미만		[직공비x0.0141%]x공기(년)		
7등급 미만	1.01	건축		70억 이상 - 120억 미만		[100만원+(직공비-75억원)x0.0102%]x공기(년)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*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 *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/산자부 고시 제2023-131호, 2023.7.1.)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120억 이상 - 250억 미만		[150만원+(직공비-130억원)x0.0077%]x공기(년)		
[건강보험료]	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[연금보험료]	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· 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		250억 이상 - 500억 미만		[240만원+(직공비-250억원)x0.0063%]x공기(년)	
(직노) x 3.545	(건강보험료) x 12.95	(직노) x 4.5	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관련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산		500억 이상		[400만원+(직공비-500억원)x0.0050%]x공기(년)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 모든 건설공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)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[퇴직공제부금비]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국가유산 수리공사		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액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		
(직노) x 2.3		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율을 적용	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,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		

## 2024년 건축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4. 7. 1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격)	[일반관리비]		[이윤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· 전기·통신· 소방·기타		(노+경+일) x 율	종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6	12.6	5.2	5.2	5억 미만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안전관리비 대상액 <sup>*)</sup>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
	7~12개월 (365일)	12.6	12.6	5.2	5.2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8	12.8	5.6	5.6												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3	12.3	5.5	5.5	5억 - 30억 미만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5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
	7~12개월 (365일)	12.4	12.4	5.5	5.5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5	12.5	5.8	5.8												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6	11.6	5.5	5.5	30억 - 50억 미만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5억 ~ 50억 미만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
	7~12개월 (365일)	11.7	11.7	5.5	5.5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1.8	11.8	5.9	5.9										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3	11.3	5.8	5.8	50억 - 100억 미만	5.5	12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50억 이상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
	7~12개월 (365일)	11.4	11.4	5.8	5.8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1.5	11.5	6.2	6.2												
	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7	11.7	6.4	100억 이상	4.5	9.0	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*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일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					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 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 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															
<b>[산재보험료]</b>				<b>[환경보전비]</b>				<b>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</b>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					
(노) x 3.56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		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4-1호(2024. 1. 5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*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구분		요율		공사규모(추정가격)				* 건설공사의 종류					
		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0.9		50억 미만				- [건축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나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			
		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0.4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		- [토목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			
				지하철		0.5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		- [중간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					
				철도		1.5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		· 교량·담공사 등 - 담 건설공사, 제방건설공사와 관련한 제방시설공사					
			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0.5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건축)				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-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건설공사 및 제방시설공사					
				항만(간척, 준설);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		1.8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		· 터널건설공사 등 - 도로, 철도,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통로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여 있어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					
				항만(간척, 준설);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		0.8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		- [특수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마'목에서 시행규칙(별표3)에서 구분한 조정공사 /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			
				댐		1.1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건축)				· 전기공사업법, 「정보통신공사법법」, 「소방공사법법」, 「문화재수리공사법법」에 의한 공사					
				택지개발		0.6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		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간건설공사 및 열병합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					
				기타 토목(하천 등)		0.8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		2 건축공사, 토목공사 및 중간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					
				주택(재개발, 재건축)		0.7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건축)				*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, 2024.1.1.)					
				주택(신축)		0.3		50억 이상				□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, ( )은 2000.7.31.이전 (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」 제9조)					
				주택 외 건축		0.5		70억 미만				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					
				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		0.3		70억 이상~120억미만				- 추정가격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*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지적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 *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/산자부 고시 제2023-131호, 2023.7.1.)		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	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			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					
<b>[건강보험료]</b>		<b>[노인장기요양보험료]</b>		<b>[연금보험료]</b>				70억 이상~120억미만				□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, ( )은 2000.7.31.이전 (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」 제9조)					
(직노) x 3.545		(건강보험료) x 12.95		(직노) x 4.5				120억 이상~250억미만				- 추정가격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*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		120억 이상~250억미만				- 추정가격50억 ~ 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					
								250억 이상~500억미만									
<b>[퇴직공제부금비]</b>								500억 이상									
(직노) x 2.3								500억 이상									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*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								500억 이상				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을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		500억 이상									

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